

2026년도 1분기

#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

2026. 4.

감사위원회

# 1. 개요

## □ 관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8항

“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장은 월별로, 위원회와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 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

## □ 보고 대상

- 기 간 : 2026. 1. 1. ~ 3. 31. (2026년 1분기)
- 대 상 : 서울시 공익제보센터 온·오프라인
  - 온라인(응답소 부패 · 공익신고), 오프라인(우편 · 방문 등)

## □ 접수 결과

- 2026년 1분기 총 62건 접수

<표 1, 2026년 1분기 창구별 접수현황>

(단위 : 건)

접 수	창 구	합 계	1월	2월	3월
공익제보센터	공익신고	39	10	13	16
	부패신고	23	8	7	8
국민권익위원회	국민신문고	-	-	-	-
합	계	62			

※ 제보자가 접수 시 선택한 접수창구

## 2. 제보 분류 및 분배

### □ 제보 분류

- 접수된 62건 분류 결과, 공익제보 해당 민원 57건

<표 2, 공익제보 분류 결과>

(단위 : 건)

총 계	공익제보 해당 57건(92%)		일 반*
	부패신고	공익신고	
62 (100%)	22 (35.5%)	35 (56.5%)	5 (8%)

\*일반 : 공익제보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나 내용상 관련 기관 감사부서의 검토가 필요하여 이송한 민원 또는 내용 보완(증거 불충분 등)이 필요한 민원

※ 조례상 '공익제보'의 범위

구 분	개 요	신고 대상 행위
부패 신고	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(정의) "부패행위"신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b>공직자가 직무와 관련</b>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<b>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</b>하는 행위</li> <li>2. <b>공공기관의 예산사용</b>, 공공기관 <b>재산</b>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<b>계약</b>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<b>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</b></li> <li>3.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</li> </ol> <p>※ 2호의 재산상 손해는 1호의 사익도모에 의한 부패행위 유형과 균형을 이루는 정도의 행위인 경우이며 단순 부주의나 직무소홀은 제외(판례)</p>
공익 신고	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(정의) "공익침해행위"신고	<p>식품위생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한 <b>공익신고자보호법 [별표]의 신고대상 법률 위반행위</b></p>
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	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	<p>공정한 직무수행,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,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(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)등 서울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 위반 행위</p> <p><b>*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법상 부패행위에 포함됨</b></p>

## □ 제보 분배

<표 3, 제보 소관 기관별 분배>

(단위 : 건)

분배기관	유형	건수	주요 내용
<b>총</b>	<b>계</b>	<b>62</b>	
<b>본 청</b>	공익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물놀이 시설 용역 관련 조사 요청</li> <li>○ 공공안전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</li> </ul>
	부패	8	
	일반	4	
	<b>소계</b>	<b>13</b>	
<b>본 부 / 사 업 소</b>	공익	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강생태공원 민간위탁 업체 부정 행위</li> <li>○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안전 조치 미이행</li> </ul>
	부패	3	
	일반	-	
	<b>소계</b>	<b>6</b>	
<b>투 자 출 연 기 관</b>	공익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아파트 관리사무소 감사 요청</li> </ul>
	부패	1	
	일반	-	
	<b>소계</b>	<b>1</b>	
<b>자 치 구</b>	공익	3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의 업무상 배임</li> <li>○ 용역 입찰 공정성 의혹</li> <li>○ 부동산 중개업자의 위반 행위</li> <li>○ 미신고 주류 판매 업소</li> </ul>
	부패	10	
	일반	1	
	<b>소계</b>	<b>42</b>	
<b>타 기 관</b>	공익	-	
	부패	-	
	일반	-	
	<b>소계</b>	<b>0</b>	

※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,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및 조례의 비밀 보장 의무에 따라 세부 내용 미표기

[참고사항]

- 타기관 소관 제보의 경우 국민신문고로 이관 처리하거나 타기관 신고 안내 후 종결
- 공익제보센터는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제보의 분배자로서 접수된 제보를 관련 기관(자치구 포함)에 이첩하거나 제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은 일반민원 변경 등 처리

### 3. 제보 처리현황 (2026. 4. 1. 기준)

<표 4, 접수제보 처리현황>

(단위 : 건)

총 계	처리완료(0)		종결(19)			진행중
	처 분	개 선 등	안 내	취 하	사실아님	
62	-	-	11	6	2	43

<처리완료>

- 처 분 : 신분상 조치, 행정처분 등 정식 조치
- 개 선 등 : 업무개선, 구두경고, 주의촉구, 개선약속, 계도 및 행정지도 등

<종 결>

- 안 내 : 제보요건 안내, 보완요구, 타기관 신고 안내 종결
- 사실아님 : 조사결과 사실아님 종결

※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이며, 필요 시 연장 가능
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제6항